

제24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23. 09. 19.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金 玉 然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223호로 2023년 9월 6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9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제안이유

집중호우 피해 지원 등 주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추가 예산 소요분의 예산 편성이 필요하여, 「지방자치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추가경정 예산(안)의 의결을 요청함.

3. 주요내용

가. 2023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본예산+간주예산)	증(△)감	증감률(%)
합 계	1,025,517,917	1,024,878,842	639,075	0.06
일반회계	989,436,646	988,797,571	639,075	0.06
특별회계	36,081,271	36,081,271	0	0.00
의료급여	683,646	683,646	0	0.00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54,200	54,200	0	0.00
주 차 장	33,656,615	33,656,615	0	0.00
건축안전	1,686,810	1,686,810	0	0.00

4.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내역

가. 일반회계 ----- 639,075천원

1) 세입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기정예산 (본예산+간주예산)	증(△)감	비 고
계	989,436,646	988,797,571	639,075	
지방세 수입	193,111,153	193,111,153	0	
보통세	192,395,581	192,395,581	0	
지난년도 수입	715,572	715,572	0	
세외수입	81,660,367	81,660,367	0	
경 상 전 세외수입	67,219,150	67,219,150	0	
임 시 전 세외수입	9,495,937	9,495,937	0	
지방행정 제재·부과금	4,945,280	4,945,280	0	
지방교부세	19,596,000	19,596,000	0	
조정교부금 등	95,896,475	95,896,475	0	
자 치 구 조정교부금등	95,896,475	95,896,475	0	
보 조 금	381,121,141	380,482,066	639,075	
국고 보조금	217,747,977	217,583,342	164,635	
시·도비 보조금등	163,373,164	162,898,724	474,440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218,051,510	218,051,510	0	
보전수입 등	218,051,510	218,051,510	0	

2) 세출예산 편성 내역 ----- 639,075천원

● 정책사업비 ----- 3,836,246천원

※ 주요 사업 편성 내역

영등포본동 출입구 상단 보수공사(자치행정과)	43,000 천원
영등포동 자치회관(4층) 다목적 공간 조성(자치행정과)	32,320 천원
신길5구역 학교복합시설 건립 타당성 용역(미래교육과)	48,000 천원
영등포전국사진공모전 지원(문화체육과)	10,100 천원
종목별 구청장기 대회(테니스)(문화체육과)	5,000 천원
구 생활체육교실 운영(국학기공, 당구교실, 라인댄스)(문화체육과)	12,792 천원
지자체 합동평가 유공부서 포상(기획예산과)	6,750 천원
풍수해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원(지역경제과)	368,400 천원
안심일자리 사업(보조)(일자리정책과)	457,633 천원
신길종합복지관 기능보강(보조)(복지정책과) (수영장 여과기, 탈의실 등)	91,056 천원
국가보훈대상자 장례지원(복지정책과)	12,000 천원
경로당 회장 및 총무 수당지원(어르신 장애인과)	76,500 천원
경로당 전자제품 등 구입(어르신 장애인과)	32,000 천원
장애인 활동지원사 가산급여(보조)(어르신 장애인과)	329,270 천원
공원내 CCTV 설치(푸른도시과)	800,000 천원
어르신과 함께하는 공원환경 관리(푸른도시과)	22,000 천원
시니어 힐링 원예교실 운영(푸른도시과)	10,000 천원
신길근린공원 배드민턴장 조명개선(푸른도시과)	58,000 천원
다중인파 밀집지역 안전사고 예방(도시안전과)	200,000 천원
여의초교 앞 지하보도 안심 비상벨 설치(도로과)	60,000 천원
연속형 빗물받이 설치공사(치수과)	1,200,000 천원
마을버스 적자업체 재정지원(교통행정과)	93,000 천원
공동주택 관리지원(경로당 개보수)(주택과)	50,000 천원

경부선일대 종합발전 마스터 플랜 수립(도시계획과)	300,000 천원
기부채납시설 관리방안 마련(도시계획과)	60,000 천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보조)(건강증진과)	70,000 천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구비)(건강증진과)	24,000 천원
모자보건사업 보조인력비(건강증진과)	3,500 천원

● 보조금 ----- 639,075천원

- ▶ 국고보조금 등: 164,635천원
- ▶ 시·도비보조금 등: 474,440천원

● 예비비 ----- △ 3,836,246천원

- ▶ 내부유보금: △ 3,836,246천원

나. 특별회계 ----- 해당사항 없음

다. 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일반회계)

(단위 : 천원)

부 서 별		최종예산	기정액	증감액 [추경편성액]	증감률[%]
총 계		365,851,495	368,606,246	△2,754,751	△0.75
감사담당관		325,778	325,778	0	0.00
행정국	총 무 과	123,766,392	123,766,392	0	0.00
	홍보미디어과	6,780,552	6,780,552	0	0.00
	자치행정과	15,613,844	15,538,524	75,320	0.48
	미래교육과	33,751,339	33,703,339	48,000	0.14
	문화체육과	32,409,961	32,382,069	27,892	0.09

	민원여권과	1,351,892	1,351,892	0	0.00
기 획 재 정 국	기 획 예 산 과	93,218,027	97,047,523	△3,829,496	△3.95
	지 역 경 제 과	9,356,100	8,987,700	368,400	4.10
	일 자 리 정 책 과	8,159,056	7,701,423	457,633	5.94
	재 무 과	706,418	706,418	0	0.00
	징 수 과	890,908	890,908	0	0.00
	재 산 세 과	1,031,152	1,031,152	0	0.00
	지 방 소 득 세 과	148,930	148,930	0	0.00
보 건 소	보 건 위 생 과	11,050,357	11,050,357	0	0.00
	감 염 병 관 리 과	14,621,662	14,621,662	0	0.00
	건 강 증 진 과	11,151,820	11,054,320	97,500	0.88
	의 약 과	1,517,307	1,517,307	0	0.00

라. 부서별 세부 편성내역(일반회계)

【감사담당관】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	기 정 액	증(△)감	내 역
총 계	325,778	325,778	0	변동사항 없음

【행정국】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	기 정 액	증(△)감	내 역
총 계	213,673,980	213,522,768	151,212	0.07% 증
총 무 과	123,766,392	123,766,392	0	변동사항 없음

홍보 미디어과	6,780,552	6,780,552	0	변동사항 없음
자치 행정과	15,613,844	15,538,524	75,3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청사 시설보수 43,000 ◦ 자치회관 환경개선 32,320
미래 교육과	33,751,339	33,703,339	48,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칭)신길5구역 학교복합시설 건립 48,000
문화 체육과	32,409,961	32,382,069	27,89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문화예술단체 및 사업활동 지원 10,100 ◦ 구생활체육교실 운영 12,792 ◦ 종목별 구청장기 대회 5,000
민원 여권과	1,351,892	1,351,892	0	변동사항 없음

【기획재정국】

(단위 : 천원)

부서별	예산액	기정액	증(△)감	내역
총계	113,510,591	116,514,054	△3,003,463	2.58% 감
기획 예산과	93,218,027	97,047,523	△3,829,49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의행정 운영 6,750 ◦ 예비비 △3,836,246
지역 경제과	9,356,100	8,987,700	368,4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원 368,400
일자리 정책과	8,159,056	7,701,423	457,63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심일자리사업 457,633
재무과	706,418	706,418	0	변동사항 없음
징수과	890,908	890,908	0	변동사항 없음
재산세과	1,031,152	1,031,152	0	변동사항 없음
지방 소득세과	148,930	148,930	0	변동사항 없음

【보 건 소】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	기 정 액	증(△)감	내 역
총 계	38,341,146	38,243,646	97,500	0.25% 증
보 건 위 생 과	11,050,357	11,050,357	0	변동사항 없음
감 염 병 관 리 과	14,621,662	14,621,662	0	변동사항 없음
건 강 증 진 과	11,151,820	11,054,320	97,5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전환사업) 70,000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비용지원(구비) 24,000 ◦ 모자보건사업 보조인력비 3,500
의 약 과	1,517,307	1,517,307	0	변동사항 없음

5. 검토의견

가. 행정위원회에 제출된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의 일반회계 규모는 3,658억 5,100만원으로, 사업예산이 10억 8,100만원 증액 편성되고 예비비(내부유보금)이 38억 3,600만원 감액 편성되어, 기정예산 3,686억 600만원 대비 27억 5,500만원이 감액 편성됨.

나. 주요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1) 행정국

-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2,135억 2,300만원 대비 1억 5,100만원 증액(0.07%)된 2,136억 7,400만원으로, 이는 동청사 시설보수, 자치회관 환경개선, 신길5구역 학교복합

시설 건립, 구생활체육교실 운영 등이 증액 편성된 것이 주된 요인임.

- **자치행정과**는 기정예산 대비 7,500만원이 증액(0.48%)된 156억 1,400만원이 계상됨.

이는 동청사 시설보수 사업이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영등포 본동 출입구 상단 구조물 보수공사에 4,300만원이 증액되고, 영등포동 자치회관 3층 공유부엌 조성공사 일정에 맞추어 4층에 다목적회의실을 조성하는 자치회관 환경개선 사업은 공사비 1,500만원 및 테이블 등의 집기 구입비 1,700만원을 반영하여 3,200만원 증액된 것에 기인함.

- **미래교육과**는 기정예산 대비 4,800만원이 증액(0.14%)된 337억 5,100만원이 계상됨.

이는 신길동 재개발 이후 대규모 아파트 이주로 인한 지역주민의 복합시설에 대한 요구 해소 및 대방초교 학생 과밀화로 인해 협소한 교육공간을 추가로 확보하고자 하는 3,008.6㎡ 규모의 (가칭)신길5구역 학교복합시설 건립 사업(신길동 4960, 4961)에 교육부 사업 공모 등을 통해 외부재원을 확보하고자 타당성 조사 등을 위한 용역비 4,800만원이 신규 편성된 것에 기인함.

- **문화체육과**는 기정예산 대비 2,800만원이 증액(0.09%)된 324억 1,000만원이 계상됨.

이는 관내 지역예술인에 대해 전시 행사 개최 등을 지원하는 지역문화예술단체 및 사업활동 지원 사업이 사진 예술인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전국사진공모전 재개에 1,000만원 신규 편성되고, 구생활체육교실 운영 사업이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국학기공 및 당구교실을 신규 개설하고 라인댄스 교실에 대해서는 연장 운영하고자 함에 따라 그에 따른 운영비 1,300만원 등이 증액 편성된 것에 기인함.

(2) 기획재정국

-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1,165억 1,400만원 대비 8억 3,200만원이 증액(0.71%)된 1,173억 4,600만원으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원, 안심일자리 사업 등이 증액 편성되고 예비비가 감액 편성된 것이 주된 요인임.
- **기획예산과**는 기정예산 대비 38억 2,900만원이 감액(△3.95%)된 932억 1,800만원이 계상된 바, **창의행정 운영**은 2022년 지자체 합동평가에서 우수구로 선정됨에 따라 확보하게 된 재정인센티브 2,300만원의 30%에 해당하는 700만원을 유공부서에 포상하고자 증액 편성하였으며, 의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경비 중 일반 예비비 등 다른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지 못한 경비인 **내부유보금**은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38억 3,600만원이 감액 편성됨.
- **지역경제과**는 기정예산 대비 3억 6,800만원이 증액(4.10%)된 93억 5,600만원이 계상된 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원사업**은 7월 말에 발생한 집중 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일상회복을 위하여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시·구 매칭사업(40:60)으로서 우선 구비분담금 편성분 3억 6,800만원이 신규 편성됨.
- **일자리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4억 5,800만원이 증액(5.94%)된 81억 5,900만원이 계상된 바, 실업자 및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안심일자리 사업**은 시·구 매칭사업(70:30)으로서 시비보조금 증가에 따른 구비 편성분을 반영하여 4억 5,800만원이 증액 편성됨.

(3) 보건소

○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382억 4,300만원 대비 9,700만원이 증액(0.25%)된 383억 4,100만원으로, 이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비용지원 등이 증액된 것이 주된 요인임.

- 건강증진과는 기정예산 대비 9,800만원이 증액(0.88%)된 111억 5,200만원이 계상됨.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 파견 비용을 지원하는 시·구 매칭사업(75:25)으로서 시비보조금 증액 확정 내시 통보에 따라 7,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비용지원 사업은 저소득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증액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증가분을 반영하여 2,400만원이 증액 편성됨.

마. 검토결과

○ 본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은 내부유보금 일부와 국·시비 보조사업비 추가 내시액을 재원으로 하여, 풍수해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침수피해로 인한 영등포본동 출입구 보수사업, 안심일자리 사업 확대, 구 생활체육교실 운영사업 확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등 지역 현안 사업과 법적·의무적 경비 등을 반영하고자 하였음.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45조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안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지방자치단체장이 편성할 수 있으나,

1차 추경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이 2차 추경에 재편성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법」 등에 근거는 없으나 의회의 예산심의권 존중 차원에서 추가경정예산 편성 전 의회와 집행부 간 심도 있는 사전 논의가 필요했었다고 판단되며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는 그간 행정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사안별로 집행부의 설명을 청취 후 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참 고 자 료

1 지방재정법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1.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2.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

2 지방자치법

제142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도의회는 제1항의 예산안을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의회 는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려면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

제145조(추가경정예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142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